

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(제91조 관련)

1.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

시험조건	세부 적용차종	정지 시까지 누유량	정지 후 5분간 누유량	정지 후 5분 이후부터 25분간 누유량
가. 매시 50킬로미터 의 속도로 자동차 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	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	30그램 이하	151그램 이하	매분 30그램 이하
나. 매시 56킬로미터 로 자동차를 변형 구조물에 40퍼센 트 부분정면 충돌 시킬 때	초소형승용자동차, 제10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 정면 충돌 시 승 객보호 기준이 적 용되는 승용자동 차 및 제102조제2 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화물자 동차			
다. 매시 50킬로미터 의 속도로 950kg ±20kg 중량의 이 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	초소형자동차, 제 102조제1항에 따 라 별표 14의2의 측면 충돌 시 승 객보호 기준이 적 용되는 승용자동 차 및 제102조제2 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			

	시 승객보호 기준 이 적용되는 차량 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			
라. 매시 32킬로미터 로 자동차의 길이 방향 중심선에 75 도로 고정된 기둥 에 자동차의 옆면 을 충돌시킬 때	제10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표 14의8 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	-	142그램 이하	매분 28그램 이하
마. 매시 48킬로미터~ 52킬로미터의 속도 로 1,100kg±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	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	28그램 이하	141그램 이하	매분 28그램 이하

주)

1. 별표 14 제1호차목의 연료장치 기준(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)에 적합한 경우 위 표 나목의 부분정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2. 별표 14의2 자목의 연료장치 기준(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)에 적합한 경우 위 표 다목의 측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3. 별표 14의7 바목의 연료장치 기준(고정벽정면충돌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)에 적합한 경우 위 표 가목의 고정벽정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4. 별표 14의8 다목의 연료장치 기준(기둥측면충돌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)에 적합한 경우 위 표 라목의 기둥측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2. 차량총중량 4.5톤 이하 승합자동차

시 험 조 건	정지 시까지 누유량	정지 후 5분간 누유량	정지 후 5분 이후부터 25분간 누유량
가. 매시 48킬로미터~53킬로미터의 속	28그램 이하	141그램 이하	매분 28그램

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			
나. 매시 48킬로미터의 속도로 1,805kg ±1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충돌시킬 때			이하

주) 별표 14의7 바목의 연료장치 기준(고정벽정면충돌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)에 적합한 경우 위 표의 고정벽정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